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-

- 공고기간 : 2024. 4. 15. ~ 2024. 4. 29.(14일간)
- 공고내용

서류의 명칭 및 내용	소유자 현황		급수전 내역					체납 내역	
	성명	주소 (거주지)	수용가	위치	구경 (mm)	업종	마사용기간	체납기간	체납액 (원)
·명칭 : 직권폐전예고 ·내용 : 상·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직권폐전예고	윤*순	울산 남구 삼산로 3**, 1**동 3***호 (삼산동)	윤*순	울산 북구 호계로 1** (창평동)	13	일반용	7개월 (‘23.9.~ ‘24.3.)	17개월 (‘22.11.~ ‘24.3.)	503,780

- 의견제출기관 :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
(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, ☎ 229-5751)

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위 급수전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22조 제3항에 의거 직권폐전을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직권폐전 예고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송달 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(☎ 229-5751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4. 15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

